

■ 법률 칼럼

문호가 다시 열린 3순위 취업이민

지난 10월 1일,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지난 10월1일 문호가 다시 오픈돼 취업이민의 청원서/영주권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적체가 많이 해소돼 지난 여름부터 올라올까지 그동안 대기 중이던 3순위 취업영주권들이 다수가 승인이 되었고 인터뷰도 10월부터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스폰서 회사가 있고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신 경우는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최근에 노동청이 H-1B 수속과 관련해 적정임금 수준을 급격하게 인상했으므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계산 시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사 순수익(순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3순위 취업이민에 대한 약속

3순위 전문직/숙련공의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입니다. 숙련공의 경우는 그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Experience or Training)이 요구됩니다.

■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시 고려 사항

첫째 고려 사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3순위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학사), 전공 및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냐는 것이고 둘째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회사)의 재정 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그 직종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4,5000인 경우, 취업이민 신청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할 때부터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회사의 법인세 보고서를 통해서 연봉 \$45,000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절차

첫째 단계는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허가서를 받는 단계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폰서 회사는 광고나 다른 노력을 통해서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경우에 감사(Audit)가 나오고 있어서 신청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는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이민 청원 단계(I-140)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폰서 회사는 회사 세금 보고서(Business Tax Return)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책정한 연봉을 이민 신청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청원서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넷째는 인터뷰 단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터뷰 없이 취업영주권이 승인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포괄적 치과 치료를 위한 검사 과정

지난 1341호에서 포괄적 치과 치료라는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함께 바라보며 접근하는 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 치료 접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비 검사와 기초 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때 과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될까요? 치과 질환에 대한 검사는 크게 충치와 풍치라고 하는 잇몸 질환에 대한 것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충치는 치료법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 아말감이나, 레진, 혹은 금으로 filling을 하는 치료 방법과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 치료 및 보철 치료가 포함됩니다. 물론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치를 하게 되죠. 이처럼 충치 치료는 검사를 통해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할지 그리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질환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초진만으로 치료의 예후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가 많습니다. 심한 잇몸질환이 의심스러운 증상을 동반할 때 많은 경우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기란 초진 만으로는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결국 초진이라고 하면 충치나, 신경 감염, 잇몸 질환, 등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예후를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요구하는 “포괄적 치과진료”를 추구하는데는 초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치과 치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비 검사와 기초 치료 후 변화된 구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이차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차 검사의 목적은 좀 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각 치아의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예비 검사는 초진 시 기본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충치, 보철물 상태, 구강 위생 상태, 잇몸 질환의 존재 유무, 기타 연 / 경조직 질환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구강 검사지만 포괄적 치과치료에서는 예비 검사로 분류합니다. 이차 검사는 기초 치료 후 시행하게 되는데 기초

치료를 철저한 구강위생법에 대한 교육과 딥클리닝과 같은 일차 잇몸 치료를 말합니다. 왜 이 기초 치료가 필요한지는 충치나 잇몸 질환의 원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소위 플라그라고 하는 박테리아 덩어리에 의해 충치나 잇몸 질환이 발생하는데 좋은 구강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잇솔질 방법을 모를 경우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든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구강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강 위생법에 대한 교육을 기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구강 위생법으로 치은염과 같은 가벼운 잇몸 질환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케일링이나 딥클리닝 같은 치료를 통해 잇솔질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해 구강 위생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벼운 치주염이나 심지어 중등도의 치주염까지도 이 기초 치료과정을 통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필수적인 각 치아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 치료 후에 다시 구강 검사를 시행하여 각 치아와 치열 그리고 전반적인 구강 주위 근육과 관절의 조화를 얻기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포괄적 치과 치료를 위한 검사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예비 검사를 치과 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강 위생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스케일링 또는 딥클리닝을 통한 기본적인 잇몸 치료 후 시행하는 이차 검사를 통한 예후 결정까지 포함한 하는 과정이 “포괄적 치과 검사”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